

## 굴착공사 신청 및 이용절차

### 1 굴착공사 계획 신고



### 2 접수번호 발급



### 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



회합 · 공동표시

표시 · 단독표시

### 4 굴착공사 개시 통보



### 5 굴착공사 시행



도시가스, 고압가스, LPG배관망공급사업자 등에게 반드시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.

## 굴착공사 신고 방법

전 화 : 1644-0001  
(전국 동일, 연중무휴)

인터넷 : [www.eocs.or.kr](http://www.eocs.or.kr)

모바일 : [m.eocs.or.kr](http://m.eocs.or.kr)

A P P :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

[www.eocs.or.kr](http://www.eocs.or.kr)  
[m.eocs.or.kr](http://m.eocs.or.kr)



굴착공사신고 편의와  
도시가스 배관,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 
및 고압가스 배관 보호를 위한

# 굴착공사 신고는 1644-0001

※ 미신고 굴착공사 시 관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
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



산업통상자원부



한국가스안전공사  
KOREA GAS SAFETY CORPORATION  
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



모든 굴착공사는 굴착 전에  
**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**에 반드시  
**신고** 하여야 합니다.

### 관계법령

- ▶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
- ▶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
- ▶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 액화석유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

### 법령 위반시

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도시가스사업,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, 말뚝 박기, 터파기,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 배관 매설 유무를 확인하고, 굴착위치와, 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.

※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1.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100m이상인 경우.
2.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m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.

# 굴착공사신고 1644-0001 굴착시행 24시간 전까지 반드시 **굴착신고**

### 굴착공사 신고대상

도시가스사업,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, 말뚝 박기, 터파기,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

### 신고 제외대상

-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
-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
- 가스사업자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

### 신고 내용

굴착공사 발주사명, 굴착공사 회사명, 굴착공사 담당자명, 굴착 담당자 휴대전화번호, 굴착공사 위치(주소), 굴착공사의 종류, 굴착공사 예정일자, 사용자 부지내 굴착공사시 가스사용자 인적사항 및 시설명

- **굴착공사 계획은 공사 시행 24시간 (주말·공휴일은 요청 시간에 미포함) 전에 신고**하셔야 합니다.

※ 예) 월요일 공사 건은 전주 금요일까지 신고, 토·일요일 공사 건은 목요일까지 신고.

- 관련근거 ▶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
▶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  
▶ 액화석유가스 시행규칙 제72조의 4

### 신고방법



### 위치 확인방법 결정

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고압가스사업자 등은 해당 굴착현장 위치 및 매설된 가스 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EOCSS시스템에 입력합니다.

### 배관 표시 방법

만나서 표시하기로 한 경우(회합)

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, LPG배관망공급사업자, 고압가스사업자 등의 입회하에 굴착공사 예정 지역에는 흰색 페인트, 매설된 가스 배관 직상부에는 **황색(도시가스, LPG) 및 적색(고압가스)** 페인트로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.

도시가스 LPG 배관망공급 고압가스 사업자 굴착공사 예정지역 및 매설된 배관의 위치표시가 완료된 후,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야 합니다.

만나지 않고 표시하기로 한 경우(표시)

굴착공사자 굴착공사 예정지역을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야 합니다.

도시가스 LPG 배관망공급 고압가스 사업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공사 위치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배관 직상부에 **황색(도시가스, LPG) 및 적색(고압가스)** 표시를 하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.

### 굴착공사의 개시

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 현장 및 매설배관에 대한 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**“굴착하여도 좋다”**라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가능 여부를 통보 받은 후 해당 도시가스사에 입회요청하여 안전관리 전담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.